

林業과 그 基調轉換

李 在 石 林政研究會 理事

農 林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누가 比較優位論만 들고 나오면 알레르기性 反應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것은 一意가 없는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7百萬이란 農業人口를 가지고 있다.

全體人口의 17%란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農村의 社會的 問題를 들어 大部分의 農産物價格이 農業政策의 支持價格에 依하여 保護를 받고 있다.

林産物の 경우는 木材需要의 絶對多數를 外材에 依存하고 있어 輸入自由化 品目으로 開放된지가 오래며 農産物과 같이 支持價格 같은것은 생각도 할수없게 되었다.

그래서 國內 林業이 살아 남을수 있을까 할 정도로 林業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이 現實이다.

우리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의 흥역에 시달리고 있으나 冷嚴한 國際經濟는 물이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르듯하여 支持價格에 依하여 農林産物이 温床에서 保護를 받도록 해주지 않는다.

또 우리 林業이 살아 남도록 누가 同情을 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 嚴然한 事實앞에 서서 우리 農林業이 좀더 나아질수 있는 解決策의 열쇠는 우리 農林業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쥐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제 우리 農林業도 國際化時代를 맞아 思考의 轉換을 해야할 때가 왔다.

農林行政當局도 支持價格이니 農漁村 負債輕減이니해서 無山村의 社會政策에 힘을 모으는 消極的인 農林政策에서 脫皮 할때가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産業이고간에 基調轉換을 위하여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農林業도 이 效率的인 基調轉換에 回答을 주지 못하면 우리가 서야할 땅은 없어지고 만다는데 焦點을 맞추고 나아가야 되게 되어 있다.

多幸히도 農業分野는 今年에 農漁村開發公社가 發足이 되어 農業의 基調轉換策으로 農業構造改善에 着手을 했다.

1農家當 1ha内外의 經營規模의 零細性을 克服하기 위하여 非農家所有農地를 自營農家에게 移轉되도록하고 農業經營만으로 家計維持가 어려운 零細農은 農地를 處分하여 職業轉換을 할수있는 與件을 造成하는 同時에 專業農家が 一定規模以上 農地를 確保할수 있도록 資金支援을 하기 위하여 農地管理基金을 設置하게 되었다.

다만 이 農業構造改善事業이 問題가 되는것은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農地所有 上限線이 法的으로 規定되어 있고 地方稅法의 綜土稅負課에다 通作距離가 定해져있으며 農發法에 依하여 農業振興地域 指定等은 農業構造改善에 적지않은 障害要因이 되겠지만 이런것은 漸次改善된다고 볼때 일단 農業은 基調轉換을 위한 方向은 設定된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林業의 경우

는 一般農業보다도 事實은 構造改善이 더 時急한데도 이에 對하여 全然 손을 못대고 있다.

우리나라 山林中 絶對多數를 차지하는 私有林의 경우 一人當 平均所有規模가 2.5ha로서 當初 山林所有動機가 林業經營에 있는것이 아니라 墓所設置를 위한 所有였고 이 一人所有平均 2.5ha도 산지사방 分散되어 있어 우선 所有構造 自體가 山主로 하여금 林業經營動機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雪上加霜으로 山林法이 林野賣買證明制度를 비롯하여 所有期限의 制限乃至는 分割賣買의 禁止制度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構造調整을 위한 山林市場의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只今까지 造林事業을 한 사람들은 長久한 才月을 通해 林產物生産도 生産이지만 林地價上昇으로 財産保存價値를 더 優位에 두고 投資를 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相對林地와 絶對林지를 區分하여 林產物 生産밖에 할수없는 林業振興地域의 경우 地價가 묶여 結果的으로 造林投資를 할 意慾이 떨어질것이 分明하다고 본다.

이와같이 엮이고실킨 林業에 投資할 基礎問題가 解決되지 않고는 林業이 存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의 林政의 核은 林業이 하나의 産業으로 발돋움 할수있는 이 基調轉換에 焦點을 맞추지 못하면 主人없는 山林施策으로 轉落하고 만다.

그런데 이 林業構造調整問題는 하루아침에 되는것이 아니고 짧게는 20年, 길게는 30年을 要한다는 目標를 設定하고 着手해야할 問題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는 民有林 開發公社

같은 機構가 必要하다.

이 民有林開發公社가 零細山林을 集團으로 買入하거나 交換을 하여 이 林지를 一定規模以上 團地로 林業을 經營할 希望者에게 配分 買入케 해야한다. 이때는 林地 買入資金을 低利로 融資해 주어야함은 勿論 民有林開發公社가 買入하는 林地에 對하여는 讓渡所得稅가 免除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는 民有林開發公社法과 林地基金法 制定이 先行되어야 함은 말할 必要가 없다.

또 먼저 이를 위해서는 前術한 山林法上의 山林去來에 對한 制限要因等도 法改正 또는 制度的으로 改養되어야함도 또한 같다.

이땅에 林業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資本社會 經濟體制下에서는 이 方法論이 가장 理想的이고 合理的인 것일지라도 이것은 말보다는 大端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林業構造調整을 이 方法以外는 없는것인가 하는것을 생각해볼 必要가 있다.

國有林의 경우는 國有林公社를 만들어 國有林을 開放하고 多角經營을 通해서 國有林 經營構造를 改善하는 일이고 民有林은 民有林開發公社를 만들어 放置된 私有林에 林道를 開設하고 常勤作業團을 構成하여 團地로 造林, 育林 伐採를 하여 그產物을 山主와 分收하는 方法이 있다.

이런것들이 同時에 併行實施되고 또 有機的으로 連結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 林業構造調整에 있어 역시 時急한것은 民有林의 所有構造改善 乃至 經營構造改善이 林業經營 動機로 促發할 當面 課題라고 보아진다.